

ISO 9000

KS Q ISO 9000

SPEC

ISO 9001

KS Q ISO 9001

인증심사 안내서

KS I ISO 14001

ISO 14001



기술사인증원

심사일수 산정표

QMS심사일수 산정표

종업원수	최초 인증심사			사후관리	갱신심사	기 타
	총계	1단계	2단계			
1 ~ 5	2	0.5	1.5	1	1.5	
6 ~ 10	2.5	0.5	2	1.5	2	
11 ~ 15	3	1	2	2	2.5	
16 ~ 25	3.5	1	2.5	2	3	
26 ~ 45	4	1	3	2	3	
46 ~ 65	5	1	4	3	4	
66 ~ 85	6	1	5	3	4	
86 ~ 125	7	1	6	3	5	
126 ~ 175	8	2	6	3	5.5	
176 ~ 275	9	2	7	3	6	
276 ~ 425	10	2	8	4	7	
426 ~ 625	11	2	9	4	7.5	
626 ~ 875	12	2	10	4	8	
876 ~ 1175	13	2	11	5	9	
1176 ~ 1550	14	2	12	5	9.5	
1551 ~ 2025	15	2	13	5	10	
2026 ~ 2675	16	2	14	6	11	
2676 ~ 3450	17	2	15	6	11.5	
3451 ~ 4350	18	2	16	6	12	
4351 ~ 5450	19	2	17	7	13	
5451 ~ 6800	20	2	18	7	13.5	
6801 ~ 8500	21	2	19	7	14	
8501 ~ 10700	22	2	20	8	15	
10701 이상	위와 같이 증가					

- ※ 예비심사는 인증신청 고객이 심사를 희망할 경우, 고객과 심사일수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
- ※ 사후관리심사 주기가 1년인 경우 1M/D를 추가할 수 있다.
- ※ 사후 또는 갱신심사 시 당 인증원으로 인증기관을 변경할 경우 문서의 파악을 위하여 회사의 규모에 따라 심사일수(0.5M/D이상)를 추가할 수 있다.
- ※ 갱신심사 후 사후관리심사 주기는 9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

EMS심사일수 산정표

구 분	1단계심사				2단계심사				사후관리심사			
	제한	낮음	중간	높음	제한	낮음	중간	높음	제한	낮음	중간	높음
1 ~ 5	1	1	1	1	1.5	1.5	2	2	1	1	1	1
6 ~ 10	1	1	1	1	2	2	2	3	1	1	1	2
11 ~ 15	1	1	1	1	2	2	3	4	1	2	2	3
16 ~ 25	1	1	1	1	2	3	4	5	1	2	3	3
26 ~ 45	1	1	1	2	2	3	5	5	1	2	3	4
46 ~ 65	1	1	1	2	3	4	5	6	2	3	3	4
66 ~ 85	1	1	2	2	3	4	5	7	2	3	4	5
86 ~ 125	1	1	2	3	3	5	6	8	2	3	4	5
126 ~ 175	1	1	2	3	4	5	7	9	3	3	5	6
176 ~ 275	1	2	2	3	4	5	8	10	3	4	5	6
276 ~ 425	2	2	2	4	4	6	9	11	3	4	6	7
426 ~ 625	2	2	3	4	4	7	9	12	3	5	6	8
626 ~ 875	2	2	3	4	5	8	10	13	4	5	7	8
876 ~ 1175	2	3	4	5	5	8	11	14	4	6	7	9
1176 ~ 1550	2	3	4	5	6	9	12	15	4	6	8	10
1551 ~ 2025	2	3	4	5	6	9	13	16	4	6	8	11
2026 ~ 2675	2	3	4	6	7	10	14	17	5	7	9	12
2676 ~ 3450	2	4	4	6	7	10	15	19	5	7	9	13
3451 ~ 4350	3	4	5	6	7	11	15	21	5	8	10	14
4351 ~ 5450	3	4	5	6	8	12	16	22	6	8	10	15
5451 ~ 6800	3	4	6	7	9	13	17	23	7	9	11	15
6801 ~ 8500	3	5	6	8	10	14	19	24	8	10	12	16
8501 ~ 10700	4	5	7	9	10	15	20	25	9	10	13	17
10701 이상	인증원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.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의 산정표는 기업의 현상이나 업무의 환경측면 복잡성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다. 갱신심사 M/D는 최초심사의 2/3로 적용한다. 												

심사MAN-DAY 사항

- 예비심사는 신청기업의 희망에 의해, 최초심사의 50%이내에서,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최초 심사일수의 90%이상은 현장심사에 사용합니다.
-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심사일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심사일수 산정표는 한 개의 사업장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심사대상 사업장이 원거리이거나 다수일 때 심사대상 사업장의 이동시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실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인증신청자와 협의하여 상기표의 심사일수에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 MAN-DAY는 종업원수에 따른 심사일수 산정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, 복수조직여부, 교대근무여부, 사업의 형태, 생산라인, 종업원들의 수행작업의 다양성, 기업의 규모, 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상태와 내부감사절차에 대한 신뢰성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후 6개월 또는 9개월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**인증서의 유효기간 : 인증후 3년**
 - 3년주기로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고 신청비는 제외됩니다.
- 종업원수는 총고용 인원으로 직·간접 인원(생산, 행정, 관리, 간부직) 및 전체교대 근무조 인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.
- 통합심사(두가지 이상의 경영시스템)의 경우, 심사일수는 각각에 대한 심사일수 합 의 75%로 산정된다.

건설현장, 설치현장, 영업소, 설계사무소, 물류창고를 보유한 기업의 인증심사

- **건설현장, 설치현장의 심사기준**
 -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장 자체는 인증대상이 아니며, 그러한 사업장들은 각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으며, 시스템의 운영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확보 대상으로 인증의 표본에 대한 심사를 다음과 같이 샘플링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.
 - 심사범위에 해당되는 시공 및 설치현장 중
 - 단일공종 30개소 미만일 경우는 1개 사업장,
 - 단일공종 30개소 이상일 경우는 2개 사업장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.
 - 지반조성공사, 건축물축조, 토목공사, 건물설비설치, 건설장비 임대업 등 특성별로 샘플링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
 - 공정진행율 : 총공사의 30%~80%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설치, 시공현장을 샘플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**영업사무소, 설계사무소, 물류창고의 심사기준**
 - 심사범위에 해당되는 영업소, 설계사무소, 물류창고 등의 지원조직은 종류별로
 - 20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개소를,
 - 20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.

복합심사

- 인증신청업체가 세부심사 코드를 2개 이상 신청하거나, 1개의 세부심사 코드에 다른 세부심사 코드와 관련된 주요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업체의 심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세부심사 코드를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심사팀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.

기타 인증심사와 관련한 공지사항

- 최초 인증심사 가능시점
 - ① 품질시스템 및/또는 환경시스템을 구축·문서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을 시행·유지하고
 - ② 내부감사와 경영검토를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한 경우
- 인증제도에 관련되는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최초인증심사, 사후관리심사, 갱신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, 관련기록의 열람과 신청자측 직원의 면담 허용 등을 포함한 실사준비가 필요합니다.
- 인증심사 수행 시 심사에 동행하는 인원(인정심사원, 훈련원, 기술전문가 등)에 대해서는 인증심사 전에 발송되는 공문에 사전 수락 협의를 공지합니다.
- 신청자의 품질시스템 및/또는 환경시스템이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행·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,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- 심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(교통비,숙식비)는 인증신청 업체에서 실비 부담하여야 하며, 심사 전에 청구합니다.
- 인증 취득 후 수행되는 사후관리 심사비용은 실시년도, 심사일수 및 심사비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.
- 인증심사, 등록, 유지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은 당사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,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인증과 관련된 고객사의 인증 사용 권리와 인증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사항은 인증심사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인증심사 시 심사팀장에 의해 공지됩니다.
- **기밀유지와 관련한 공지사항**

당 인증원은 고객의 정보를 인증등록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또는 심사활동 결과로 작성된 모든 정보는 비밀보장이 됩니다.

단, 당 인증원이 국제/국가규격에 준용하여 공신력 있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인정기관(한국인정원)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들 정보들이 감사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.